

문서번호 : 2025 - FSD - 013

발 신 : 이지스엔터프라이즈㈜

수 신 : 수신처 참조

시행일자 : 2025년 03월 10일

제 목 :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고객거래확인서 징구 협조의 건

1.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 당사에서 실시하는 [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서비스]와 관련한 귀사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'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' (이하 '특정금융정보법') 개정으로 2019년 7월부터 전자금융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, 당사가 관리비를 지급하는 대상인 단지(입대위)와 관리비 정산 계좌에 대한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. (<별첨> 관련 법령 참조)
3. 이에 당사는 관리소와의 '수납대행계약'으로 해당 절차를 갈음하고 있었으나,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개선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 서류를 징구하고자 안내드립니다.
4. 또한 금년부터 수납대행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신설 (제 15 조 자금세탁 방지 의무) 및 변경 되었으니 공문 수신일 이후 신규 계약 건부터 변경된 수납대행계약서로 안내가 나갈 수 있도록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< 다 음 >

가. 대상: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 중인 전 단지

나. 징구 서류: 고객거래확인서 및 첨부 서류 (상세 별첨)

다. 제출 기한

I. 신규 자동이체 이용 예정 단지: '수납대행계약' 체결 시 첨부 양식 제출

II. 기존 수납대행계약 기체결 단지: 2025년 4월 30일까지 첨부 양식 제출

라. 제출 방법

팩스(02-6281-7321) 또는 이메일(aegis0157@aegisep.com)로 제출

마. 제출 주기

3년 주기로 고객 재확인 서류 제출 (아파트데스크 사이트 별도 공지 예정)

AEGIS ENTERPRISE Co.,Ltd

08506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 2동 714호 www.aegisep.com
TEL 1566-0157 FAX 02-6281-7321



5. 상기 서식은 아파트데스크 고객센터 →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, 메일로도 파일을 첨부해 드리니 필요하신 경우 단지 및 위탁사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.
6. 자료 미제출 시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(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) 4 항(거래거절)에 따라 아파트데스크 제공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법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7. 문의사항은 아파트데스크 고객센터(1566-0157) 또는 이메일(aegis0157@aegisep.com)로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이지스엔터프라이즈(주) 대표이사 최병인



수신처: 흥진데이터서비스,마스타데이터,에이디에스,우주전산,로즈시스템,하나전산,오리엔트빌링서비스,주택전산,에이스산업기술(주),신라아이티,백경인포시스템,우리네솔루션,홍익전산,현대전산,셋별전산,피닉스컴퓨터시스템즈,부건피앤피(주),이지데이터,유니빌,한국전산,우리전산,동서씨앤아이,아파트테크,에이앤비시스템,유정기획,현대아미스,에이엠아이,이엠씨,경진씨앤이전산,베스트엠,휴먼정보,에이스정보,오리엔트엔디티,다주전산,SMsoftwar,이지스직영,인천지사IMC,부경-대전,(주)현성이지스,이리스중부솔루션,제일솔루션,테라시스템경북,인츠전산(대구),전북미성시스템,인츠앤씨,전남지사디앤씨,이리스엠피케이솔루션,이지웹,홈스타,주택관리공단,기성정보기술,더존인프라,씨엔에이,이지스(아이창),(주)IMC제주,엔마스터(주)

<별첨> 관련 법령 (특정금융정보법 제 2 장 금융회사 등의 의무)

제 4 조(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)

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2.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 3 조제 3 항을

누구든지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, 같은 조 제 5 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 6 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,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

제 5 조의 2(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)

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(注意)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.

1.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

가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

나.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(이하 이 조에서 “실제 소유자”라 한다)에 관한 사항. 다만,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2.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: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

가. 제 1 호 각 목의 사항

나.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
(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)

~중략~

④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,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.

1.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

~후략~